

『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2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2월 18일

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개정된 「국민제안규정」 및 「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」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.
- 제안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구미시 시민을 포함하여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 제안 건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안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의 대상을 확대함.(안 제1조)
-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 관련 제안 발굴 근거 마련(안 제3조, 안 제7조의2)
-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(안 제4조)
- 제안 제출 및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4조)
- 공모제안 처리기간을 명시(안 제13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통일(안 제16조, 안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제안 규정 및 시행규칙」, 「공무원제안규정 및 시행규칙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제안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, 생활 공감정책관련 제안발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
-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고 제안제출 방법을 구체화하여, 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, 공모제안 처리 기간의 명시와 함께 창안등급 및 부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의 대상을 확대함.
- 안 제3조, 안 제7조의2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생활공감 정책 관련 제안 발굴 근거 마련하였음.
- 안 제4조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하고 제안 제출 및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안 제13조에 공모제안 처리기간을 명시함.
- 안 제16조, 안 제18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통일

○ 검토결과

- 제안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제안 건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활공감 정책 제안 발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제안 제출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타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